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희승·서영교·윤준병

강훈식 • 홍기원 • 김준혁

위성곤 • 신영대 • 강유정

박홍배 · 소병훈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"착한 임대인 세액공제"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.

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,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.

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,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,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, 실효적인

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,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'의 일몰제 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의3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4년 12월 31일까지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 이라 한다) 인하하여"을 "인하하여"로, "100분의 70"을 "100분의 80"으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	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		
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	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	①		
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			
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			
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			
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			
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			
일부터 <u>2024년 12월 31일까지</u>			
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			
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	<u>인하하여</u>		
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			
대료 인하액의 <u>100분의 70</u> (대	<u>100분의 80</u>	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			
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			
경우에는 100분의 50)에 해당			
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			
세에서 공제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